

<5년근 이하 인삼제품의 중국 수출동향 및 여건>

자료작성: 베이징aT센터(2014.7.16)

한국의 5년근 이하 인삼을 사용한 인삼제품이 보건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음료 등)으로 통관(상하이, 칭다오 등)되고 있음. 5년근 이하 인삼이 식품원료로 비준된 이래(2012.8) 중국 통관시 보건식품등록증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원활하게 통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수출시 한국 내 인삼제품 생산자가 별도의 생산자 등록, 인삼제품등록을 중국에 별도로 해야 하는 등의 규제는 없음. 다만 제품은 중국 규정에 따른 주의사항(5년근 이하 인삼임을 명시, 기능성 문구를 넣을 수 없음)을 준수해야 함.

한국의 주요 관심품목인 한국산 5년근 이하 홍삼제품도 일반식품으로 보아 통관시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중국측으로부터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 현지 바이어들 사이에서도 한국산 인삼제품 수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인지도가 달라, 수입이 아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이어도 많은 상황임

□ 한국산 인삼제품(5년근 이하)의 중국 수입 사례

- A사 인삼음료, B사 **인삼주 등이 중국에 수입되고 있음
 - 세관신고시 일반식품군(음료, 증류주)으로 신고를 했으며, 인삼주 수입시 사용된 인삼이 5년 이하라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받아 인삼 경작증명서(농식품부 인삼산업법에 의거, 지역단위 인삼농협 발급)를 제출 후 통관하였음
 - 또한 일반식품으로 수입되었기 때문에 제품에는 인삼의 기능성을 알리는 문구표기는 금지됨

□ 5년근 이하의 인삼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인삼제품은 중국 수입통관시 보건식품등록증이 필요하지 않음

- 중국 위생부가 ‘인삼 신자원식품 비준 공고’ (2012년 8월 29일)를 하여 기존에는 약재로만 분류되던 인공재배 된 5년 이하 인삼을 식품원료(신자원식품)으로 분류를 새롭게 하게 됨. 이것의 배경으로는 중국내 인삼산지인 길림성 및 관련업계에 서의 인삼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에 대한 것으로 추정됨.

* 현재 5년 이하 한국산 인삼제품을 신자원식품으로 등록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중국이 아래기준의 인삼은 식용원료로 사용해도 된다고 이미 비준하였기 때문에 (‘12.8.29), 아래의 공고내용을 준수할 경우 제품별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이 일반식품으로 중국수출이 가능함

* 공고내용과 관련법규에 따르면 재배인삼은 식품원료로 식품가공에 사용할 수 있음, 단 주의사항은 공고내용에 따라 원료명칭에 5년근 및 5년근 이하 재배인삼임을 명시하고 식용량과 적합하지 않는 군체(소비자)를 명시, 기능성을 알리는 문구는 사용불가

- * 완제품에 필요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인삼의 기능성을 알리는 문구를 넣을 시 보건 식품으로 간주됨

<인삼의 신자원식품 비준 공고내용(2012.8)>

중문명칭	인삼(인공재배), 人參(人工种植)
라틴명칭	Panax Ginseng C.A.Meyer
기본정보	5년 및 5년이하 인공재배 인삼
종속	오가과, 인삼속
식용부위	근 및 근경
식용량	≤3g/일, (≤3克/天)
기타 설명 필요 상황	1. 위생안전지표는 중국의 관련표준요구에 부합되어야한다. 2. 임산부, 수유기 부녀 및 14세 이하 아동은 식용이 적합하지 않다.(孕妇、哺乳期妇女及14周岁以下儿童不宜食用) 3. 라벨 및 설명서에 복용이 적합하지 않은 군체(소비자)와 식용 제한량을 표기해야한다.

- 중국의 <식품안전법>실시에 맞춰 [신자원식품관리방법]이라는 명칭을 [신식품원료안전성심사관리방법]으로 바꿈(2013.10.1.)

<5년근 이하 인삼과 관련된 중국의 관련규정 발표 이력>

No	관련법규	발표 & 실시일	주요내용
1 단 계	신자원식품위생 관리방법	1990년 7월 28일 발표	- 직접 소비자 대상의 완제품 식품에 대한 관리방법 - 기업별로 자체 생산제품을 신청하여 허가받아 생산
2 단 계	신자원식품 관리방법	2007년 12월 1일 발표	- 완제품 식품에서 식품원료로 변경, 위생부 공고로 대체 - 위생부에서 공고한 신자원식품(원료)은 식품가공에 사용 가능
	* 인삼 신자원식품 비준 공고 (2012.8.29)" 를 통해 그동안 약재로만 분류되 었던 인삼에 대해 인공 재배된 5년 이하 인삼은 신자원식품(식품원료)으로 분류		
3 단 계	신식품원료안전성심사 관리방법	2013년 10월 1일 실시	- 2007년 관리방법의 신자원식품이란 사실 식품원료에 대한 관리방법이 있으나 명칭상 오해여지가 높음 - 또한 <식품안전법>의 실시에 맞춰 2013년 신식품원료안전성심사관리 방법으로 대체 * 기존 신자원식품관리방법은 폐기

□ 중국내 5년근 이하 인삼제품 생산 동향

- 2012년 위생부가 5년근 이하 인삼을 식용원료로 비준을 했으나 실제로 식품 생산허가증을 발급하는 중국질검총국에서는 아직 제도상으로 준비가 안 되었음
 - 식품 생산허가증 발급 가능 28개 식품부류(국질검[2007]644호)에는 인삼제품생산 허가증 분류는 여전히 없어 신자원식품관리방법을 통해 인삼제품이 식품 영역에 진입했으나, 실제 식품으로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식품 생산허가증은 제도상으로 발급은 안되는 상황임(중국 인민망 2013년 12월 보도자료)
 - * 원칙적으로 28개 식품부류에 속하지 않은 품목은 보건식품 등 기타제품으로 등록 필요
- 현재까지 인삼은 식품 생산허가증 발급 식품부류에 속하지 않고 있으나, 현지 생산 공장에서는 음료(인삼음료), 기타식품(홍삼절편 등) 등으로 신청을 하여 질검총국으로부터 생산허가증을 받아 생산하고 있음
 - * 아직은 위생부, 질검총국 부처 간에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비가 되지는 않은 상황 이긴 하지만, 인삼함유 제품을 일반식품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산 인삼 및 홍삼제품의 일반식품으로서의 수입에 대한 현지 동향

- 홍삼제품의 경우 중국수출이 가능한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음
 - 소관부서인 위생부에서도 명확히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약전>에서는 인삼과 홍삼을 구분해 놓아 홍삼은 2012년 식용원료 비준목록에 해당이 안된다는 일부의견도 있음
 - 다만 홍삼 역시 인삼을 가공한 제품인 관계로 대중국 수출 시 현지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는 수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임
 - * 5년근 이하 인삼, 홍삼제품을 일반식품으로 보는 것에 대해 중국 현지 관련업계 내에서도 아직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임
- 또한 한국식품 수입 바이어들 중에서도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는 경우, 아직까지 인삼이 함유되면 반드시 보건식품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함
 - 규정은 상기와 같은 실제 수출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시험수출 등을 해야 하나 이러한 사례가 적고 수출업체에서는 주로 중국측 바이어 의견에 따라 수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례가 많음

□ 참고 사이트

- 관련기관 <http://www.nhfpc.gov.cn/> <http://www.jdZX.net.cn/>
- 업계반응 <http://www.foodmate.net/>